

국방부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 방 부 (군소음보상TF)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우선순위,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용도 제한 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방법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법령 3단비교표, 별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군용비행장

가. 군용비행장 유형

나. 소음 민원 발생 현황

다. 군용비행장의 개편계획

라. 군용비행장이 소재한 시·군·구의 인구현황

마. 소음영향도 조사 여건

2. 군사격장

가. 화기 유형

나. 소음 민원 발생 현황

다. 연간 사격 일수

라. 군사격장의 개편계획

마. 군사격장이 소재한 읍·면·동의 인구현황

바. 소음영향도 조사 여건

제3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

$$\text{소음영향도(WECPNL)} = \bar{L}_{\max} + 10\log N - 27$$

2. 소형화기 군사격장(dB(A))

$$\text{소음영향도}(L_{Rdn}, \text{dB(A)}) = 10\log \left(\sum_{i=1}^n 10^{\frac{L_{RAE-i}}{10}} + \sum_{j=1}^m 10^{\frac{L_{RAE-j}+10}{10}} \right) - 10\log T$$

3. 대형화기 군사격장(dB(C))

$$\text{소음영향도}(L_{Rdn}, \text{dB(C)}) = 10\log \left(\sum_{i=1}^n 10^{\frac{L_{RCB-i}}{10}} + \sum_{j=1}^m 10^{\frac{L_{RCB-j}+10}{10}} \right) - 10\log T$$

②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의 경계선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구역을 중첩하여 생성된 구역별 합집합의 경계선으로 본다. 단,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1항제4

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영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은 소음영향도(WECPNL) 82 이상 90 미만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L_{max} 및 N 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_{max} 값은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 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_i 는 i 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bar{L}_{max} = 10 \log \left[\frac{1}{n} \sum_{i=1}^n 10^{0.1 L_i} \right] \text{ dB(A)}$$

2. N 값은 하루 동안의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_1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_2 ,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N_3 ,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 전까지의 횟수를 N_4 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N = N_2 + 3N_3 + 10(N_1 + N_4)$$

④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L_{RAE,di}$ 및 $L_{RAE,nj}$ 그리고 측정시간 T 는 다음과 같다.

1. 측정시간 T 는 T_d 와 T_n 으로 구분하며, 주간 시간대 T_d 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이고, 야간 시간대 T_n 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이며, 초 단위를 사용한다.

$$T = T_d + T_n$$

2. $L_{RAE,di}$ 와 $L_{RAE,nj}$ 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소형화기 충격소음 보정치($K_S=12\text{dB}$)를 더한 A-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_{RAE} = L_{AE} + K_S$$

여기서 di 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 번째 사격 이벤트를, nj 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 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한다.

3. L_{AE} 는 A-가중 소음노출레벨로, 소형화기 사격 이벤트 소음 에너지를 합한 소음도이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_{AE} = 10 \log \left[\sum_{i=1}^n 10^{0.1 L_{Aeq,1s,i}} \right]$$

여기서, $L_{Aeq,1s,i}$ 는 i 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인 1초 단위의 A-가중 등가소음도이다.

⑤ 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L_{RCE,di}$ 및 $L_{RCE,nj}$ 그리고 측정시간 T 는 다음과 같다.

1. 측정시간 T 는 T_d 와 T_n 으로 구분하며, 주간 시간대 T_d 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이고, 야간 시간대 T_n 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이며, 초 단위를 사용한다.

$$T = T_d + T_n$$

2. $L_{RCE,di}$ 와 $L_{RCE,nj}$ 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대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대형화기 충격소음 보정치($K_L=18\text{dB}$)를

더한 C-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_{RCE} = L_{CE} + K_L$$

여기서 d_i 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 번째 사격 이벤트를, n_j 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 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한다.

3. L_{CE} 는 C-가중 소음노출레벨로, 대형화기 사격 이벤트 소음 에너지를 합한 소음도이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L_{CE} = 10 \log \left[\sum_{i=1}^n 10^{0.1 L_{Ceq,1s,i}} \right]$$

여기서, $L_{Ceq,1s,i}$ 는 i 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인 1초 단위의 C-가중 등가소음도이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군용비행장을 이륙·착륙하는 비행 횟수 및 비행경로, 해당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사격횟수 및 사격지점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의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간만 사격하거나 야간만 사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의 소음영향도만 산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실태 파악)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동소음측정망으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말일과 1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소음 저감 대책 시행방안, 소음대책지역 변경 필요 여부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소음분포 확인 및 향로감시가 용이한 지점일 것
3.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에 의한 영향이 작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시기

2. 자동소음측정망의 배치도

3. 자동소음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자동소음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제4조 관련)

구분 대상 시설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용 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허가	없음	없음
교육 및 의료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허가	없음	없음
공공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허가	없음	없음

비 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장·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 설치조건은 창이 경우 ‘복층창 16mm+복층창 16mm’,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mm’와 동등이상의 차음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을 따른다. 이 경우 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한한다.